#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51 발의연월일 : 2022. 12. 27.

발 의 자:고민정·윤재갑·한병도

김영배 · 김용민 · 김의겸

김두관 • 전용기 • 민형배

전혜숙 · 정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음.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의 자가망을 활용하여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등 통신사업자들의 와이파이망이부족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통신사의 개방 와이파이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제공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갈등과 사업 추진의 애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2015.1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신고자와 신고·수리자가동일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제17호, 제7조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제65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말한다.
-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재정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 한다) 사업
-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도지사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65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6.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u>
	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
	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
	<u>한다.</u>
<u> &lt;신 설&gt;</u>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
	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
	<u>식으로 수집・가공・저장・검</u>
	<u>색·송신·수신 및 활용하거</u>
	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
	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
	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
	<u>한다.</u>
제7조(등록의 <u>결격사유</u> ) (생 략)	제7조(등록의 <u>결격사유 등</u> )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신 설>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 조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정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사업 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 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적합 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신설>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세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u>다만, 시·도</u>
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
치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u>약 한덕.</u> ② (현행과 같음)
3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 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 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 ④ (생 략)

<신 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 •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 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도 지사에게 한 경우: 시·도지 사
-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 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 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 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1. • 2. (생략)

③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사용정지 또는 개조·수리나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
1. · 2.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u>